

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(마포래미안푸르지오·목동현대A)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재개발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매입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사무로,
- 나. 장기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독점해 온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'14년부터 민간에 일부 위탁운영(마포래미안푸르지오·목동현대A)하여, 입주민 근접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및 민간사업자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한 바,
- 다. 효율적 운영을 위해 2개단지를 통합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여,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(마포래미안푸르지오·목동현대A) 운영 및 관리
- 나. 주요 위탁내용
 - 위탁대상 : 재개발임대주택 2개단지, 9개동, 1,201호
 - 마포래미안푸르지오(아현3구역) 7개동, 661호
 - 목동현대아파트 2개동, 540호

○ 위탁업무 : 임대사업자 업무(임대차계약, 입주·퇴거, 임대료 부과 등) 및 주택관리업무 전반

○ 소요예산 : 총 2,539,307천원(3년)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	소요예산	세부내역
2021년	834,307	위탁수수료, 공가관리비, 수선유지비, 특별수선충당금 등
2022년	845,000	
2023년	860,000	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○ 위탁기간 : 3년 이내(2021.위탁일 ~ 2023.12.31.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○ 추진근거 :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추진현황 : 신규

※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통합위탁 시 신규 처리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비해 관리단지가 적어 입주민에 대한 근접서비스가 가능하여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바,

○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의 안정적 수행으로 입주민에게 양질의 주거복지 제공과 민간사업자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가 있음

마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김보미 (☎ 2133-7032)